

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12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2002. 12. 20

(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기획감사실장 김 종 철

※ 보건소장이 병가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제안설명

나. 제정사유

-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고, 사무소는 당해 지역 보건진료소 내에 둠. (안 제2조)
- 명칭, 사업에 관한 사항, 회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,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. (안 제3조)
-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,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으로 함. (안 제5조, 제6조)
- 협의회는 진료수입, 회원의 회비, 보조금, 찬조금,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. (안 제8조)

음.

- 따라서 진료비 등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가 없어 이를 현실화하고, 아울러 이에 관한 전라남도의 표준조례안이 2002. 5. 20에 있어,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.
- 본 제정안의 법규상,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보건소.보건지소.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